

2018학년도 제2차 협성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8년 8월 8일(수) 오후 2시
2. 장 소 : 본관3층 제1회의실
3. 참석자 : (의장) 황인태
(의원) 이학수, 김주열, 박덕화, 윤용택, 윤경용, 이경호, 이미혜, 정기영
(참관) 고재모, 정현석, 이선진
4. 불참자 : (의원) 이제호, 이찬규

5. 안건 및 결의내용

- 가. 전차회의록 - 원안가결
- 나. 규정 개정(안) 심의
 - 1)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 원안가결
 - 2) 대학원 학칙 개정(안) - 원안가결

6. 회의내용

- 황인태 의장 : 총 의원 11명 중 참석 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학년도 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함
- 황인태 의장 : 총 2건의 안건이 있으며, 제1호 안건 전차회의록을 상정함
- 황인태 의장 :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 제1호 안건 전차회의록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함
- 김주열 의원 : 동의함
- 박덕화 의원 : 재청함
- 황인태 의장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 전 체 : 예
- 황인태 의장 : 제1호 안건 전차회의록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함
- 황인태 의장 : 제2호 1항 안건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상정함. 제2호 1항 안건에 대하여 부총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 고재모 부총장 :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안건을 설명함. <회의자료 참조>
제12조는 재입학과 관련된 조항으로 징계·제적된 자의 재입학 불허 내용을 삭제하여, 재입학을 허용하고자 하고자 함. 제42조는 자퇴에 관련된 조항으로 기존에 자퇴와 퇴학을 혼용하였기 때문에 퇴학 관련 조항을 제42조의2로 신설하고자 함
- 황인태 의장 :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관련 내용 질의를 요청함
- 김주열 의원 : 재입학 관련하여 세부 사항이 있는지 질문함

간서명	이 경 호		정 기 영
-----	-------	---	-------

고재모 부총장 : 학칙 시행세칙에 재입학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음

김주열 의원 : 제12조 3항의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징계·제적된 학생의 재입학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준다는 것인데 이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함

이학수 의원 : 징계·제적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사유로 징계·제적되는지 궁금함

이경호 의원 : 대학이 점차 민주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징계·제적되는 학생은 거의 없음

이학수 의원 : 재입학과 관련하여 학칙 시행세칙 내용이 궁금함

고재모 부총장 : 학칙 시행세칙 제8조 재입학 허가요건이 있으며, 3항에 퇴학 처분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박덕화 의원 : 제12조 4항에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3항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됨

황인태 의장 :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 제2호 1항 안건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함

이학수 의원 : 동의함

김주열 의원 : 재청함

황인태 의장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체 : 예

황인태 의장 : 제2호 1항 안건 협성대학교학칙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황인태 의장 : 제2호 2항 대학원 학칙 개정(안) 안건을 상정함. 제2호 2항 안건에 대하여 부총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고재모 부총장 : 제2호 2항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함 <회의자료 참조>
제12조 등록금반환과 제34조 지도감독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제12조 등록금 반환과 관련하여 대학원의 등록금 반환은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17조 ‘등록금의반환’ 조항을 준용해 왔으나, 제117조가 ‘졸업고사 대체’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원 학칙을 변경하고자 함. 또한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대학원 학생 권리장전’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황인태 의장 : 대학원 학칙 개정(안) 관련 내용 질의를 요청함

이학수 의원 : 대학원 학생 권리장전 제2조 3항에 학생은 종교 등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가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의무시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삽입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함

이경호 의원 : 사실 종교적으로 강요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판결했을 때, 대부분 학생이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짐.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임


고재모 부총장 : 이 권리장전은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본교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사는 유지하되, 일반적인 기준으로 검토를 부탁함

박덕화 의원 : 대학원 권리장전 내용이 국가 기관에서 제시한 표준(안)인지 질문함

고재모 부총장 : 표준(안)이 아님을 답함. 타대학 권리장전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대학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답함

간서명			
-----	---	---	---

- 박덕화 의원 : 제7조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1항 ‘학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질문함
- 이미혜 의원 : 대학원에는 원우회라는 학생 자치회가 있음을 답함
- 고재모 부총장 : 원우회는 대학원 운영 각 분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박덕화 의원 : 원우회 회칙에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권리장전 제7조만으로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함
- 고재모 부총장 : 의원님 의견을 참고하여 원우회 회칙을 검토하겠음
- 박덕화 의원 : 제10조 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2항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이 지도교수를 지정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질문함. 어떤 대학원에서는 지도교수 1명에 여러 명의 학생이 몰려 원하는 지도교수를 배정 못 받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음
- 고재모 부총장 : 우리대학에서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사실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바꾸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만, 교원이 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10조 2항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박덕화 의원 : 제12조 그 밖의 권리 조항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학생은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의미 전달력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함
- 고재모 부총장 : 권리장전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원안 그대로 ‘학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함
- 황인태 의장 : 다른 질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동의와 재청을 요청함
- 정기영 의원 : 동의함
- 윤용택 의원 : 재청함
- 황인태 의장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 전 체 : 예
- 황인태 의장 : 제2호 2항 안전 대학원 학칙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 황인태 의장 : 본 회의의 안건은 모두 심의가 끝났음
- 황인태 의장 : 폐회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구함
- 김주열 의원 : 동의함
- 박덕화 의원 : 재청함
- 황인태 의장 : 다른 기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폐회 오후 2:30)

간서명			
-----	---	---	---

7. 참석자 확인

의 장 :

황 인 태 (인)

의 원 :

이 학 수 (인)

김 주 열 (인)

박 덕 화 (인)

윤 용 택 (인)

윤 경 용 (인)

이 경 호 (인)

이 미 혜 (인)

정 기 영 (인)

